

[의료기기 - 8]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 포기 합의서의 효력여부



1. 사실관계

공급자 외국회사 대형의료기기 업체 vs 판매자 한국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

계약해지 + 판매점 보유 재고인수 + 소액의 인센티브 금액 지급 + Final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 "더 이상의 아무런 보상청구권은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해 ICC 중재 신청 + 계약조항 - 중재지 한국, 적용법 한국법 + 주장요지: 상법 제92조의2의 대리상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 추가 보상청구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요지

한국총판 주장요지

- (i) 총판은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지위 +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되어야 함.
- (ii) 상법 제92조의2는 강행규정 + 당사자 합의로 보상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iii)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상 권리로서 대리상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 12.5조(계약종료 이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공급자 외국회사 주장요지

- (i) 판매계약 +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 아님 + 상법 제92조의2의 유추적용 불가
- (ii) 대법원 판례의 유추적용 요건 충족하지 못함 - 판매점은 계약종료 직후에 공급자의 경쟁사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자신이 획득한 고객망을 활용하고 있기에 판매점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 공급자에 현존하지 않는다.

(iii) 독일상법 제89조의2가 보상청구권의 사전배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우리 상법에서는 해당 법문 없음. 보상청구권의 강행법규성 배제 취지로 해석됨

(iv)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계약 종료시에 보상청구권을 사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함.

(v) 계약종료 후 final agreement로 사후 포기한 것임.

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판정 요지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요건으로 3가지 제시

(i) 판매점이 공급자의 영업조직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ii) 판매점이 계약해지 후 공급자에게 고객정보를 양도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iii)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중재판정: 본건은 한국 판매점의 위와 같은 유추적용 요건 불충족 + 보상청구권 사후 포기 인정 → 청구기각

계약종료 후 당사자가 더 이상 양자간 아무런 보상/배상도 없다고 합의한 것은 이미 상
법 제92조의2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아무런 보상도 묻
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보상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설령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범이라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분쟁발생 사후 당사자의 권
리포기는 가능함.

약사변호사, 의료기기법, 식약처, 인허가법률자문, 행정소송, 공동연구개발, 계약분쟁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